NEW YORK STATE | Workers' Compensation Board

통지: 청구인은 네트워크 의료 기관을 통해 진단 검사 및 검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DT-1

뉴욕주- 산재 보상 위원회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보험사의 진단 검사 네트워크을 통해 진단 검사 및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 통지는 산재 보상법 §13-a(7) 및 12 NYCRR 325-7에 따라 청구인과 치료 담당 의료 기관에게 제공됩니다.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청구인이 진단 검사 네트워크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험사 이름

통지 날짜: _____

아래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 **청구인에게 통지**

청구인: _____ (이름) _____ (중간 첫 글자) _____ (성) WCB 사건 번호: _____ (해당하는 경우)

우편 주소: _____

보험사 사건 번호: _____

☐ **치료 담당 의료 기관에게 통지**

치료 담당 의료 기관의 이름: _____ 승인 번호: _____

우편 주소: _____

청구인이 진단 검사 네트워크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 진단 검진 또는 검사를 확인하십시오(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 모두 ☐ MRI ☐ CT ☐ EMG/NCS ☐ 진단 초음파 ☐ X-Ray

☐ 기타: _____

진단 검진 또는 검사를 예약하려면, 아래 목록에 있는 진단 검사 네트워크에 문의하십시오.

진단 검사 네트워크:

진단 검사 네트워크 이름, 주소, 무료 전화번호 및 웹 주소 또는 이메일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진단 검사 네트워크 _____

우편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 _____ 팩스 번호: (____) _____

웹 주소: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설명 - 진단 검사 네트워크(WCL §13-a(7) 및 12 NYCRR §325-7)

1. 청구인은 최소 다섯[5] 곳의 의료 기관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 기관은 청구인의 집이나 직장에서 적당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 내에 가능한 의료 기관이 다섯[5] 곳 미만이라면 해당 네트워크는 청구인에게 모든 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검사 요청 후 영업일 기준 오[5] 일 이내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네트워크가 보험사에 검사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의 의사가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오[5] 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청구인은 검사를 수행할 네트워크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인은 어떤 의료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담당 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이 통지서를 자신의 모든 의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6.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네트워크 의료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 의료 기관에서 영업일 오[5] 일 이내에 검사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b. 보험사가 해당 청구에 이의를 제기(논쟁)하거나 논쟁할 예정입니다.
   c. 의료 응급 상황의 경우.
   d.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의사 진료 과정에서 촬영하여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x-rays의 경우: 골절, 골절 가능성, 관절 탈구, 종양, 감염, 외과용 임플란트의 느슨해짐, 인공 관절의 탈구, 척추 불안정성 또는 수술 후속 조치.
7. 보험사가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는 네트워크 영역 밖에서 받는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 서면 요청 시, 네트워크는 실제 검사 필름, 데이터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청구인의 의사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서면 요청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보고서와 함께 청구인의 의사에게 발송됩니다. 검사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의사는 의료 치료 지침에 규정된 대로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2차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9. 청구인은 의료 기관 방문에 적당한 교통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단 검사 네트워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웹 사이트의 위원회 회보 및 주제 번호(Board Bulletins and Subject Numbers)에 있는 주제 번호 046-48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